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 ○ 사건개요

- 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2023. 5.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차장 자녀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 관련 특혜의혹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에 청구인은 5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5. 31.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피청구인 감사원은 5. 31.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하고, 6. 1. ‘감사자료 제출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청구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실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
- 청구인이 6. 2. 보도자료를 통해 사무총장 등 4명을 당일에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업무 관련 공무원 4명을 향후 징계의결 요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청구인의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하자, 피청구인은 감사원법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의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감사 거부 및 방해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임을 알렸음
- 청구인은 2023. 6. 9.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된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관하여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감사를 수용할 것이나, 피청구인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청구인은 2023. 7. 28.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헌법 제97조가 예정한 행정기관이 아니며, 감사원법 제24조는 직무감찰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제3항은 선언적·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사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는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함

※ 위 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종국결정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